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합의내용

- 재정경제원 -

I. 거시정책

1. 거시경제목표

- 경상수지 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 성장률을 98년에 3% 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2. 통화 및 환율정책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 기조로 전환
-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율을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데 국한

3. 재정정책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수 없는

- 금융부문의 구조조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도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 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 대비 0.8%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세입조치 예)

-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기반 확대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세출조치 예)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 우선 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II.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개혁법안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 말까지 통과되어야 함.
 -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개정안」
 -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금융감독기구는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2.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 회생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확충이 필요
 -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게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부실대출 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 모든 은행은 BIS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조정되어야 함.
-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 종금사에 대한 감독 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 국내 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III. 기타 구조개혁

1. 무역 자유화

- WTO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2. 자본 자유화

-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 말까지는 55%까지 확대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없이 허용함.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점차 간소화를 통하여 더욱 축소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3.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골격은 계속 유지
-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 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4. 노동시장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5.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화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 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 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자료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 외채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자료

1. IMF 자금지원 요청의 배경

가. 최근의 상황

- 기아 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와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노출
 - 이렇게 노출된 위험에 대한 해결의지나 능력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우리 경제나 정부에 대한 국제금융사회의 신뢰가 급속히 하락
- 이번에 노출된 우리 경제의 위험
 - 금융부문의 취약성: 대규모의 부실채권

(단위:조원, %)

	부실채권(A)	총여신(B)	비중(A/B)	GDP비중
은행	28.5	453.3	6.3	6.8
중금	3.9	133.5	2.9	0.9
합계	32.4	586.8	5.5	7.7

주 : 1)은행은 97.9월말 기준, 중금은 97.10월말 기준

- 기업의 과다 차입구조

(단위:%)

	한국(96)	미국(95)	일본(95)	대만(95)
부채비율	317.1	159.7	206.3	85.7
금융비용/매출액	3.9	-	1.6	2.2

주 : 1)제조업 기준

○ 외국금융기관 등은 이러한 우리경제의 위험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전망이 희박하다는 전망하에 대출금을 회수

- 노동법, 금융관련법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권의 문제점
- 기아 등 대기업 부도처리, 부실금융기관 대책 · 집행의 지연 등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의구심

나. IMF자금지원 요청의 배경

○ 외국인들이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외환부족사태 발생

- 어느 나라나 외국인 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는 것이 불가피
- 특히 우리나라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한층 더 취약

(단위:억달러, %)

	한국(97.10)	일본(95)	미국(94)	영국(94)	태국(95)
외환보유고	305	1,724	412	385	354
총외채	1,197 ¹⁾	19,759	33,492	21,528	568
(단기외채비중)	(54.8)	(54.3)	-	-	(45.3)

주 : 1)97.9월말 잠정치

○ 그동안 추진했던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화확보를 위해 기울였던 대책이나 노력이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에 는 역부족

- 여러차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11월 19일에는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추진,

환율변동 허용폭 대폭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

- 외국의 금융기관 및 우방국가들과 여러 경로를 통해 자금조달방안을 협의하였으나 IMF프로그램이 있어야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반응이었음.

○ 결국 IMF자금지원이 없이는 시급한 외화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IMF에 유동성 조절자금의 지원을 요청하게 됨.

다. 협의경과 및 IMF자금지원의 성격

○ 협의경과

- 11월 21일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발표
- 11월 25일 금융기관 부실현황 파악 및 부실기관 정리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시작
- 11월 27일 거시 · 재정 · 대외거래 등 경제전반에 대한 협의 시작
- 12월 3일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IMF총재와 합의

○ IMF 자금지원의 성격

- IMF자금은 회원국의 일시적 외화유동성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리로 지원되는 자금
 - 멕시코 · 태국 ·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자금과 함께 지원되며, 지원규모와 조건은 IMF 및 참여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
- IMF자금은 3개월 단위로 지원조건 이행을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추가지원이 이루어지므로 한번 결정된 지원조건은 지켜져야 함
 - IMF 입장에서는 빌려준 자금을 확실히 상환받아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함.
 - 우리 입상에서도 부실채권의 조기정리, 경상수지 흑자전환 등 우리 경제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

2. IMF와의 합의내용 설명

가. 거시정책

(1) 거시경제 목표

- ◆ 경상수지 적자를 98년, 99년에 GDP의 1% 이내에서 유지
- ◆ 물가를 5% 이내로 유지
- ◆ 성장률을 98년에 3%정도로 하고 99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

○ 합의된 거시경제 목표는 우리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활력을 찾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표에 맞추어 거시경제정책을 추진

- 다만 경제성장·물가·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성과는 경제운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성격이 아님.

IMF 프로그램시의 전망

	1997	1998	1999
경제성장(%)	6.0	3.0	5.6
물가상승률(%)	4.3	5.0	4.6
경상수지(억달러)	△135	△43	△21
(GDP비율)	(△3.0)	(△1.0)	(△0.5)

(2) 통화 및 환율정책

- ◆ 통화정책은 현재의 위기 극복에 대한 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시장에 나타내면서, 시장의 인정을 도모하고 최근의 원화 절하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즉시 긴축기조로 전환
- ◆ 따라서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환수되어야 하며 현재 14~16% 수준인 시장금리는 시장안정을 위하여 상승을 용인
- ◆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 신축적인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시장개입은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데 국한

○ 현행 통화정책

- 적정성장, 물가안정을 위한 적정 유동성 공급

* 통화증가율 = 성장률 + 물가상승률 + 유통속도 하락률

통화증가율 추이

(연평균, %)

	1992	1993	1994	1995	1996	97.10말
M2	18.4	18.6	15.6	15.5	16.2	18.0
MCT	24.7	22.9	23.5	21.6	21.7	13.2
M3	21.5	21.1	23.5	19.9	19.0	16.2 ¹⁾

주 : 1) 97.8월말 현재

○ 긴축적 통화정책의 필요성

- 성장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를 조기해소 → 외환보유고의 확충 → IMF 지원자금 상환
- 단기적인 고금리는 외화 유입을 촉진하여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
- 최근의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흡수

○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일시적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기업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주식시장의 위축이 우려되나 물가가 안정되어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 자본시장 개방 확대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해외 저리 자금 이용 기회가 확대되어 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리 안정에 기여

(단위, %)

	91	92	93	94	95	96	97.1~9	97.10	11.26	12.3
회사채수익률	18.9	14.0	12.6	12.9	13.8	11.87	12.11	12.53	18.55	18.74
콜금리	17.2	13.8	12.1	12.4	12.5	12.36	12.56	13.79	15.67	15.84
성장	9.1	5.1	5.8	8.6	9.0	7.8	6.1			
물가	9.3	4.5	5.8	5.6	4.7	4.5	4.2 ¹⁾			

주 : 1) 97. 10월 현재

(3) 재정정책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아직 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98년도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되어야 함

◆ 98년 통합재정수지는 경기회복의 지연에 따라 GDP대비 0.8%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GDP 1%는 약 4.6조원에 해당)

-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이자비용 추정치는 현재 GDP의 0.8% 수준임
- 재정수지의 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함
- 이 대응조치는 세입 및 세출 양측면에서 취해져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이 곧 결정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다음 조치들도 대안으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임

(세입조치에)

- 부가기치세의 과세범위 확대 및 면제 축소
-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 기반 확대
- 각종 소득공제·비과세 등의 축소에 의한 소득세 과세 기반 확대
-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인상

(세출조치에)

-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부문에 대한 지원의 삭감
- 우선순위가 낮은 자본지출의 삭감

○ 현재 98년 예산은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대비 0.2% 수준(1.1조원)의 흑자로 편성되어 있음.

○ 그러나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GDP대비 약 1.5%의 재정적자요인 발생 전망

- 내년도 경상성장률의 하락 전망에 따른 조세수입 및 사회보장기여금 등 감소: 3.6조원(GDP대비 0.8%)
- 또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빠른 시일내 마무리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 3.6조원(GDP대비 0.8%)

○ 이러한 재정적자 요인으로 통화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재정 부문에서 흡수하여 수지균형 또는 약간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예산에서 GDP대비 약 1.5% 수준인 약 7조원의 세입증대 및 세출 삭감 조치가 필요

○ 약 7조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서도 IMF가 예시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

나. 금융부문 구조조정

(1) 금융개혁법안

◆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다음의 금융개혁법안들은 금년말 까지 통과되어야 함.

-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물가안정을 주요 임무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
- 은행·증권·보험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법률안(「금융 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금융감독기구는 부실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함.
- 기업의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에 의해 공인되도록 함.

○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에 통화관리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위원장 겸직 폐지,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 회의소집권, 업무검사권 및 정관변경 승인권 등 폐지
- 지난 11월 24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정책위원장, 재경위위원장 및 재경원장관등 5인이 회동하여 12월 18일 대선이후 연내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 은행·증권·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으로 다원화·분권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
- 한보, 기아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처리를 강화하고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
- 한국은행법 개정법률안과 함께 처리될 전망

○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

- 현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 또는 30% 이상 소유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를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짐.
- 현행 연결재무제표제도는 회사간 형식적 지분관계만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인 중심으로 실질적 소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재무구조와 경영행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
- 따라서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하나의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2)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 회생 불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생 가능한 부실 금융기관은 구조조정과 자본 확충이 필요

- 신뢰할 수 있고 명확한 퇴출정책은 대내외 투자자들에게 의한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폐쇄도 포함함.
- 주주와 채권자들간에 부실채권으로 인한 손실의 배분에 관한 명확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12월 2일 9개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 업무를 정지시켰

음.

◆ 부실대출 정리는 가속화되어야 함.

- 정부는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일괄 매입 정리할 계획
- 98년 1월말까지 부실채권의 50%를 매입하기로 한 당초의 계획보다 매입규모를 확대
- * 부실채권규모(97년 9월말 기준) : 32.4조원(은행 28.5조원, 증권사 3.9조원)

◆ 현재의 예금전액보장제도는 3년내에 끝내고 부분보장제도로 대체되어야 함.

- 기존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종합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증권회사의 경우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회사의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예금부분보장)
- 한편 지난 11월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예금 원리금 전액을 보호(→예금전액보장)
- 예금전액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과도한 고수익·고위험 추구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
- 반면, 부분보장제도의 경우에는 고액 예금자에 의한 금융기관 감시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고,
 -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소액 예금자의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될 뿐 아니라
 - 과도한 예금보험금 지급에 따른 예금보험 기금의 고갈을 방지하여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 금융시장의 안정기반이 확보되면 부분보장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 따라서 2001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원래의 부분보장제도로 전환

◆ 모든 은행은 BIS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진일정을 수립하여야 함.

• 금융의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가 강력히 요구됨에 따라 각국은 상호협조에 입각하여 통일된 자기자본규제 기준(BIS기준) 수립을 도모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은행규제감독위원회(Basle Committee on Banking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actice)의 회원국(G-10국가 및 룩셈부르크)이 87년 12월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기준안을 합의하였으며 이것을 주요국가에서 채택

○ BIS 자기자본비율의 정의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위험자산 × 100
 - BIS는 은행이 동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

○ 우리나라의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

- 97년 6월말 기준으로 일반은행의 평균비율은 9% 수준임.

○ 그러나 97년 6월말 결산시 반영되지 않은 기아, 진로, 대농 등 대기업의 부실화에 따른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과 주식시장 침체,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시 97년 12월 결산시에는 BIS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럴 경우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건전성 감독기준은 BIS의 감독핵심원칙(core principles)에 맞추어 상향 조정되어야 함.

○ 일국의 은행체도가 취약할 경우 자국 금융시장은 물론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건전성 규제 강화를 위하여 G-10 회원국, 15개 신흥금융시장 국가 및 IMF/IBRD와 협의를 거쳐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핵심원칙(일명 바젤 핵심원칙)을 제정(97.9.23)

- 이를 통해 은행감독제도를 보강하려는 각국 은행감독 당국에게 감독상의 기본적 준거를 제시

• IMF, IBRD 등 국제기구도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은행감독제도를 보강하려는 각국의 노력을 지원함에 있어 동 원칙을 적용할 방침

○ 바젤 핵심원칙은 효과적 은행감독제도에 필요한 25개의 기본적 사항을 포괄

- 효과적 은행감독을 위한 전제조건(원칙 1)
- 설립인가 및 조직구조(원칙 2~5)
- 건전성 규제 및 요건(원칙 6~15)
- 은행 영업활동에 대한 감독수단(원칙 16~20)
- 정보공시(원칙 21)
- 은행감독당국의 공식적 권한(원칙 22)
- 국제적 업무(원칙 23~25)

◆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시 반드시 조건이 부과되어야 함.

○ 제일은행에 대한 현물출자 및 한국은행 특별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 특별대출시

- 인원 감축, 점포 축소 등 자구계획과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영진의 사표를 포함한 책임경영각서 및 노동동의서를 함께 징구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유사사례 발생시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을 요구할 계획

◆ 한국은행 유동성지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는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기록되어야 함.

- 금융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한 공시를 통하여 관련 이해 관계자의 수용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내외의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
 -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공표
 -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기준 사전 공시
 - 부실 금융기관의 판단기준과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실사기준 마련·공시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금조달 방안, 금융권별 정리내역, 향후 추진일정을 정기적으로 공시

◆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강화되어야 하며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에 의해 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기준중 일부 금융업종의 경우 유가증권 평가손을 반영하지 않는 등 국제기준과 괴리
 -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재 금융기관은 임의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 가능
 - 향후 총자산 일정규모 이상인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회계법인(예: 외국 6대 회계법인 회원사)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함

◆ 종금사에 대한 감독인력은 충분히 보강되어야 함.

- 현재 종금사에 대한 감독권한은 재정경제원이 가지고 있으며, 실제 검사는 은행감독원에서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기구 통합시 감독 인력의 확충 및 기능강화 가능

◆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계획이 가속화되어야 함. 특히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 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이 허용되어야 함.

- 은행의 경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기준은행과의 합

작 및 신규합작· 현지법인 설립을 당초일정(98.12월)보다 앞당겨 98년중에 조기 허용

- 증권산업의 개방계획
 - 현재 외국 증권사 등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에서 지점이나 합작사 이외의 방법으로는 국내 진출이 사실상 불가
 - 지점 설치의 경우 추가 지점 설치시 영업기금의 추가 도입의무 등으로 국내 영업기반 확대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
 - 기존사 M&A 허용: 관련법 개정후 즉시
 -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개정
 - 현지법인 설립허용: 98년 중반기까지
 - 조치사항: 증권거래법 개정

현행 증권산업의 개방현황 및 계획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
현지법인	98.12	98.12	97.12
합작법인	90.11(기개방)	96.12(기개방)	97.12
지점	90.11(기개방)	96.12(기개방)	95.12(기개방)
사무소	81.1(기개방)	93.1(기개방)	93.1(기개방)
기존사M&A	98.12	97.12	98.12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차입 및 대출활동이 건전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되어야 하며, 유지가 어려운 지점들은 폐쇄되어야 함.

- 국내 외국환은행 해외지점 98개(97년 10월말 현재) 중 그동안 영업부진 및 부실여신 과다 등으로 은행 전체의 경영수지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일부 지점에 대해 그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 유도
 - 즉시 정리대상: 일정기간내 폐지 또는 매각토록 조치
 - 유예기간후 정리대상: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유예기간(3년간)후에도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후 자동정리
 - 경영개선 권고 대상: 경영개선 권고기간(2년)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점포를 유예

기간후 정리대상으로 분류하거나, 해당 은행의 신규 해외진출시 불이익을 부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 관리방식은 보다 국제적인 관행에 따르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어야 함. 특히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해 보유고를 예치하는 것은 더 이상 증가 시켜서는 안되며,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점차 줄여야 함. 금융기관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및 위험도 평가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다. 기타 구조개혁

(1) 무역 자유화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정을 수립함.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수입승인제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 무역관련 보조금의 폐지

- WTO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등은 98년말까지 폐지하기로 되어 있음.

○ 수입승인제 폐지

- 97년 1월 1일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모든 상품에 대해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입제한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무역업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누구나 신고만 하면 무역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음.

- 현재 남아있는 수입제한품목은 쇠고기관련 8개품목과 긴급수입제한품목인 모조분유 4개 품목인 바 WTO 규정에 의해 WTO/수입허가절차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음.

○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7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이나 매년 그 품목수를 축소하여 97년 11월 현재 113개 품목(HS 10단위 기준)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WTO 출범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 자유화 추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차례씩 대상품목을 축소하여 99년말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 수입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의 개정을 통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없이 수출입 할 수 있도록 개선

- 또한 통관단계에 있어서도 사전면허(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96년 7월 1일부터 사전신고제로 개선

(2) 자본자유화

◆현재의 자본자유화 일정은 다음 사항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를 통하여 보다 앞당겨져야 함.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97년말까지 50%까지, 98년 말까지는 55%까지 확대

- 외국은행이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하고자 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바, 은행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허용

- 외국인의 국내 단기금융상품 매입을 제한없이 허용함.

- 국내 회사채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 없이 허용함.

-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제한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욱 축소되어야 함.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 철폐

○92년 1월 외국인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국내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구조개선이 필요

- 현행법상 외국인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은행 주식을 4% 초과하여 매입할 수 있음.
- 단기금융시장의 개방 상황

(단위:%)

	92.1	94.12.1	95.7.1	96.4.1	96.10.1	97.5.2	97.11.3
전체투자한도							
일반상장법인	10	12	15	18	20	23	26
공공적법인	8	8	10	12	15	18	21
1인당한도							
일반상장법인	3	3	3	4	5	6	7
공공적법인	1	1	1	1	1	1	1

- 현재 외수증권, Country Fund 등을 통한 CP 등의 매입은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지만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원칙적으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사항 (외국환관리규전)

- 채권시장 개방일정을 감안하여 개방시기를 결정

○ 채권시장 개방확대

- 94년 7월 중소기업 무보증CB개방, 97년 6월 대기업 무보증CB 및 중소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개방
- 97년 12월 대기업 무보증 중·장기채 및 만기 3년이상 보증회사채 및 전환사채 개방예정
- 추후 외환시장, 내외 금리동향 등을 감안하여 회사채 투자한도 폐지 등 채권시장 개방을 가속화

○ 현재 OECD에 제출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자유화율은 98년 1월 98.2%, 99년 1월 98.4%, 2000년 1월 98.6%로 제고될 예정임.

○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은 현재 시설채 도입용, SOC사업용의 경우 허용되어 있으나, 현금 차관 등은 제한되어 있음.

- 98년 1월 추진일정: 시설채 도입용 상업차관 및 외화증권 발행한도 폐지, 용자 비율 확대(대기업 70~80% → 80%) 등

(3)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구조

◆ 독립적인 외부감사, 완전공시 및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회계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수립

◆ 은행대출의 상업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정부는 은행경영과 대출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됨.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함.

◆ 개별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지원을 해서는 안됨

◆ 금융실명제는 일부 보완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기본 골격을 계속 유지

◆ 기업의 높은 부채-자본비율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기업자금조달의 은행차입 비중을 축소하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켜야 함. 상호채무보증은 위험이 큰 만큼 재벌내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되어야 함.

○ 그동안 공정거래법 개정(97년 4월시행)에 의한 한도 축소(자기자본의 200%→100%) 등으로 계열사간 채무보증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 비율 (단위: %)

93.4	94.4	95.4	96.4	97.4
342.4	169.3	95.2	55.9	47.0

(4) 노동시장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추가적인 조치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고용보험제도 개요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로써 95년 7월 도입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의 3가지 사업으로 운용

* 실업급여는 96년 7월부터 지급개시

- 적용대상 사업장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 실업급여: 상시근로자 30인이상

* 강제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하에 임의가입 가능

○ 고용보험기능 강화방안

-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
 - 98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는 30인이상 사업장 → 10인 이상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70인 이상 사업장 → 50인이상

• 이후에도 단계적 확대 추진

- 고용안정사업의 고용조정 지원 프로그램 확충

• 기존의 휴업, 인력 재배치, 직업전환훈련지원 등 6개 프로그램 외에 근로시간 단축지원, 장기실직자 채용 지원 등 5개 지원 프로그램 추가(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중)

- 실업급여 지급기간(현행 30~210일)의 합리적 조정 방안 강구

○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진방향

- 97년 3월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고용조정, 근로시간의 탄력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
- 현재 불법인 근로자파견제를 허용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법을 조기에 제정하고 계약제고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

(5)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의 구성 및 선물환 순포지션 등을 포함한 외환보유고 관련자료는 당해 월말, 분기말로부터 2주내에 정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함. 부실여신·자본의 적정성·소유구조 및 결합형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자료

들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공개되어야 함. 단기 외채 자료는 분기별로 공표함.

3. 경제전망

○ IMF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 노력을 경주할 경우, 내년도에는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나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되어 중기적으로는 6.5%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성장을 하락에 따라 내년도 실업률의 상승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99년부터 성장세가 회복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할 것임.
-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계속 축소되다가 2000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는 내년도에는 그동안의 환율절하 효과로 인해 다소 높아질 전망이나 99년 이후에는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IMF프로그램하에서의 중기전망

(단위:%)

	97	98	99	2000	2001	2002
GDP성장률	6.0	3.0	5.6	6.0	6.3	6.5
실업률	2.5	3.9	3.8	3.5	3.2	2.9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0	4.6	4.1	3.7	2.9
경상수지	△135	△43	△21	22	36	45
(GDP비율)	(△3.0)	(△1.0)	(△0.5)	(0.4)	(0.6)	(0.7)
무역수지	△47	39	57	98	108	110
무역의·이전수지	△88	△82	△78	△76	△72	△65

○ 한편 IMF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내년도 성장은 4.5%로 전망되지만,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경제의 활력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성장률은 중기적으로는 2.5% 수준으로 낮아질 것임.

○ 결국 IMF 프로그램에 따를 경우 내년에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이나 구조조정은 진행되면서 성장률·물가·국제수지 등 모든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IMF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의 중기전망 (단위:%)

	97	98	99	2000	2001	2002
GDP성장률	6.0	4.5	4.2	3.7	2.5	2.5
실업률	2.5	3.2	3.6	4.2	4.9	5.1
소비자물가상승률	4.3	5.1	4.6	4.2	3.9	3.5
경상수지	△135	△59	△32	11	3	29

보일 것으로 전망됨.

4. 결어

- IMF 자금지원이 시작되면 달러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외국의 민간 자금들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기 시작할 것임.

- 따라서 IMF의 자금지원 개시는 문제 해결의 마무리가 아니고 문제 해결의 출발점에 와 있다고 할 것임.
- 앞으로 국내의 정치사회적인 이유로 해서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IMF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 또 다시 외국의 민간금융기관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임.
- 영국,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등 IMF의 긴급자금을 지원 받았던 나라들의 경험을 보아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경제회생 여부를 판가름
- 영국과 태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멕시코와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중임.
-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므로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를 기대함. ☪

해/외/석/유

英BP, 일본에서 저가공급

일본에서 휘발유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의 메이저 BP는 '97년 12월 15일부터 같은 상권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휘발유를 판매할 계획이다.

내년봄에 셀프주유가 가능하게 되면, 1배럴당 3-5엔정도 낮게 책정할 전망이다. 또한 음식시설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편의점을 병설하는 등 수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1호점은 증권슈퍼 이세야그룹이 伊勢崎市에서 경영하는 대형쇼핑센터내에 일본법인의 BP재팬이 직영으로 개설하였다. 현재 주변에 있는 주유소의 판매가는 리터당 90-92엔 수준으로 BP는 85-87엔을 책정할 전망이다. 2호점도 마찬가지로 상권내에서 최저가격을 고수할 방침이다. 휘발유등 석유제품의 공급은 1호점에 대해서는 三菱石油로부터 조달한다. 그 동안은 점원이 급유하고 대금은 손님이 지불하는 세미셀프식이었으나, 98년 봄부터는 셀프식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BP는 향후 6-7년동안 관동의 이세야그룹의 상업시설내에서 100여개의 주유소를 개설할 계획이며, 98년에는 일부지역에서 4개소를 개업한다. 게다가 오르면 이세야그룹 이외의 유통기업과도 제휴하여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주유소는 점포면적이 약 200평방미터로 기존의 것보다 2배가량 크며, BP익스프레스를 병설한다. 또한 음식시설을 갖춰 집객력을 높일 계획이다. 주유소는 월간 500킬로리터, 편의점은 1천만엔의 판매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BP사는 이미 호주에서 음식시설을 갖춘 편의점을 운영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바 있다. 주유소업계는 96년 다이에가 저가를 표방하며 시장에 진출한 이후 주변의 가격이 일시에 하락한 바 있어, 이번 BP의 사업계획으로 다시 한번 가격경쟁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 97.12.12)